##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

[시행 2023. 11. 1.] [조례 제2002호, 2023. 11. 1., 일부개정]

경기도 파주시(복지지원과), 031-940-501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,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7.06.01, 2014.5.20, 2018.9.28)

#### 제2조(삭제 2018.9.28)

#### 제3조(융자대상)

-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(이하 "융자금"이라 한다)의 융자대상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.<개정 2007.06.01, 2013.5.14, 2014.5.20, 2018.9.28, 2023.11.1>
- 1. 행상,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
- 2.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(개정 2007.06.01)
- 3.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
- 6. 저소득 장애인(근로자 포함한다)의 생업, 기술훈련,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(신설 2013.5.14)
- 7. 그 밖에 파주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(개정 2007.06.01, 2013.5.14, 2018.9.28)
- ② <삭제 2023.11.1>
-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8.9.28)

#### 제4조(융자금액 등)

- ① <삭제 2023.11.1>
- ② 융자금은 1세대마다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5.14, 2018.9.28, 2023.11.1>
- ③ <삭제 2023.11.1>
-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,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.<개정 2003. 1.13, 2013.5.14, 2018.9.28, 2023.11.1>

#### 제5조(신청절차)

-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0.12.14, 2018.9.28, 2023.11.1>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 (개정 2018.9.28)

#### 제6조(융자의 상환 등)

-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9.28, 2023.11.1>
-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8.9.28, 2023.11.1>
- 1.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(개정 2018.9.28)
- 2.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<개정 2018.9.28, 2023.11.1>

#### 제7조(삭제 2018.9.28)

- 제8조(특별회계의 설치)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07.06.01, 2018.9.28)
- 제8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본조 신설 2018.9.28, 개정 2023.11.1>

#### 제9조(세입, 세출)

-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,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.(개정 2007.06.01, 2018.9.28)
-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. (개정 2018.9.28)
- 제10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 (개정 2018.9.28)
- 제11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.

#### 제12조(면제조치)

- ①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8.9.28, 2023.11.1>
-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 (개정 2018.9.28)

#### 제13조(결손처분)

-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.<개정 2023.11.1>
- 1.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
- 2.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. (본조신설 2018.9.28)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제13조에서 이동]

### 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았거나 상환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(2000.12.14 조례 제37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2003. 1.13 조례 제47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11.1. 조례 제200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융자금의 연체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 (2007. 6. 1 조례 제71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2013.5.14 조례 제109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부칙 (2014.5.20 조례 제116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 (2018.9.28 조례 제144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